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 및 보안대책

Analysis of C2C Internet Fraud and Its Counter Measures

정진호(Jinhyo Jung)*, 이창무(Chang-Moo Lee)**

초 록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직거래 사기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인터넷 사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피해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제수단의 보안 강화 및 법제 개선 등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ABSTRACT

In recent days, internet appears to be a daily necessity, which leads to the increase of internet fraud.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upon C2C internet fraud, while other researches on internet fraud seldom touch such a topi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tark reality of the soaring C2C online fraud, to categorize the type of the frauds,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the fraud, and to suggest security measures to prevent the C2C online fraud.

키워드 : 인터넷, 직거래, 인터넷 사기, 사이버범죄, 피해유형, 범죄예방, 보안대책
Internet, C2C, Internet Fraud, Cyber Crime, Crime Prevention, Security Measures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15-H8501-15-1018).

* First Author, Graduate School of Security Convergence, Chung-Ang University(sosilion@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Chung-Ang University(cmllee@cau.ac.kr)

Received: 2015-05-07, Review completed: 2015-05-19, Accepted: 2015-05-22

1. 서론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부작용과 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83.6%이며, 이용자수는 4,112만 명에 이르고 있다[10]. 이제 인터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으며 우리 생활의 필수요소가 되어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는 직접거래의 형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거래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거래의 공간이 마련되고, 그 특성에 따라 활성화된 개인 간 직거래는 많은 편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은 단점들 역시 존재한다. 개인 간의 인터넷 거래는 중개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상대방과의 신뢰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며, 표준화된 거래 체계와 이용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직거래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56,667건에 달하고,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2014년 5. 1부터 10. 31까지의 인터넷 직거래 사기 건수는 4,891건으로 이는 2014년 전체 해킹사건 1,648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이며 전체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수를 기록하고 있다[12].

인터넷 직거래 장터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 많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피해를 줄 수 있고, 범행 장

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범죄가 늘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사기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한 인터넷 사기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지만 본 연구는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피해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제수단의 보안 강화 등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2.1 인터넷 사기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사기 행위를 벌이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란 수단을 통해 사기의 법적 해당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형법 제347조)를 말한다. 즉, 사기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망행위로부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처분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갖는다[8]. 따라서 인터넷 사기란 인터넷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사기가 심각한 이유는 물리적 공간 제약이 없다는 점을 비롯한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일컬어지는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시간·공간의 초월성 등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 신분 등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인터넷 사기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15]. 또 사이버 공간에서는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자아의식 또한 낮아지게 되어 욕구와 충동의 자제가 어렵게 되어 범죄 증가가 용이한 측면도 있다[16].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탈과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함으로써 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의 증가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연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21].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사기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되고 있다[19]. 이러한 인터넷 사기 피해와 연구는 주로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인도와 같은 신흥 IT 강국에서도 최근 들어 인터넷 사기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4]. 인터넷 경매도 인터넷 사기 피해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leem and Antwi-Boasiako[1], Bay[2], Noufidali et al.[20] 등이 사례 분석 중

심으로 인터넷 경매 사기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사기와 관련한 연구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사기를 실효적 법적 규제 측면에서 다룬 Hong and Bae[8]의 연구를 비롯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14],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요인과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Choung[6], Kim[9], Kwon[13] 등의 연구와 한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비교한 연구[18]도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연구는 최근에도 지속되어 Yoo and Choi[24] 역시 전자상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예치금 제도 등 구매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Yoon and Park[25]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기활동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정의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안측면에서 전자거래 이상 징후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22].

2.2 인터넷 직거래 사기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경매사기, 일반물품 판매사기, 인터넷 서비스 사기, 인터넷 금융사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반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란 중간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콘도 이용권,

심지어, 외환과 부동산까지 인터넷 직거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주로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이용한 사례가 많다. 중고제품 거래이므로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장점에 별도의 보안대책 없이 대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대부분 미국 등 외국 연구에 국한된다. 범죄 이론적 측면에서 인터넷 사기 피해의 문제점을 고찰한 Burgard and Schlembach[5]의 연구는 Goffman의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 이론에 입각해 인터넷 사기 피해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경험을 하면서 조심과 경계가 약화되는 수준이며, 제 2단계는 사기범과 피해자가 상호작용을 계속하면서 결국 거래가 성사되는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제 3단계에서 피해자가 사기피해 사실을 자각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걸려들고(hooked on), 거래조율을 하다가(staying attuned), 결국 피해자각과 함께 현실로 돌아오는(cooling out)” 단계는 인터넷 직거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3].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부분 피해 예방 차원에서 사용 수법과 피해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razioli and Jarvenpaa[7]는 인터넷 사기에서 사기범들이 주로 가장(masking), 현혹(dazzling), 유인(decoying), 모방(mimicking), 날조(inventing), 명칭 변경(relabeling), 조작된 정보유출(double play)

등 7가지 수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사기수법은 전자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수법으로는 가장(masking), 유인(decoying), 모방(mimicking), 날조(inventing) 등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Xiao and Benbasat[23]은 인터넷 직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원인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직거래 사기가 발생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모호한 정보, 중요정보의 생략, 위조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의 위험요인과 구체적 방법을 판별하고 그에 따른 세부유형을 정리하여 피해 예방모델과 피해대응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료의 출처와 예방법이 미국 시스템에 맞춰져 있고 개인 간의 직거래가 아닌 직거래 사이트와 개인 간의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완전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관한 연구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Lee[17]가 신중 인터넷 사기거래를 연구주제로 다루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범죄를 살펴본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양국의 대응 시스템과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개인과 개인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가 계속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며, 본 연구의 필요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방법과 관련해,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관련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통계를 이용해 실태 및 추세 파악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인터넷 직거래 피해 실태

3.1 인터넷 이용의 증가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4년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만 3세 이상 국민들의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률은 7월 기준으로 83.6%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4천 100만 명을 넘어선다. 전체 인터넷 경험자가 85.9%인데 반해 1개월 이내 이용률이 83.6%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 시점에서 1주일 이내 이용률도

79.2%로 집계되어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기준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10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인터넷 이용자 수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인터넷 사기를 포함한 국내 사이버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2010년 122,902건이던 사이버 범죄는 2013년에는 155,366건으로 3년 사이 26.4%나 증가했다.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2010년 18,287건에서 2013년에는 10,407건으로 무려 43%나 줄어든 데 반해 인터넷 사기는 2010년 47,105건에서 2013년에는 85,856건으로 3년 사이에 82.3%나 증가해 커다란 대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해킹 등 비교적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에서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기만 하는 인터넷 사기와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의 증가로

<Table 1> Internet Usage Rate and Users by Frequency(% , thousand)

	1 week	1 month	3 months	1 year	Internet Experienced
Internet Usage Rate	79.2	83.6	84.0	84.3	85.9
Internet Users	38,956	41,118	41,328	41,485	42,235

Source: 2014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KISA[10].

<Table 2> Trends in Internet User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Internet Users per 100 Population	78.1	78.8	81.0	81.6	83.7	83.8	84.1	84.8	84.3

Source: 2014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KISA[10].

이어졌다고 보인다.

2014년 7월부터 사이버 범죄 통계 집계 방법이 달라지면서 이전까지 범죄 통계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나 인터넷 사기는 56,667건이 발생해 사이버 금융범죄 15,596건이나 개인위치정보침해 999건 발생 등 다른 정보통신망이용범죄보다 훨씬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집계하는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직거래사기, 쇼핑물사기, 게임사기, 기타 인터넷 사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거래 사기가 인터넷 사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 경찰이 발표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인터넷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살 것처럼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 알아낸 뒤

<Table 3> Trends in Cyber Crimes

Year	Type	Total	Cyber-Terrorism	Cyber Crimes in General						
				Sub-Total	Internet Fraud	Libel/Sexual Assaul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llegal Web-site Operation	Illegal Copy and Sale	Etc.
'10	Report	122,902	18,287	104,615	47,105	9,747	4,529	8,306	18,818	16,110
	Arrest	103,809	14,874	88,935	35,104	8,638	3,770	8,611	17,885	14,927
	Persons Arrested	111,772	16,777	94,995	36,412	9,244	4,253	10,279	18,287	16,520
'11	Report	116,961	13,396	103,565	48,755	8,882	3,160	6,908	17,161	18,699
	Arrest	91,496	10,299	81,197	32,803	7,848	2,506	6,678	15,087	16,275
	Persons Arrested	95,795	11,399	84,396	32,390	8,222	2,839	8,682	15,270	16,993
'12	Report	108,223	9,607	98,616	46,394	8,544	2,561	3,753	16,588	20,776
	Arrest	84,932	6,371	78,561	33,093	7,215	1,840	3,551	15,111	17,751
	Persons Arrested	86,513	7,239	79,274	30,826	7,743	1,972	4,639	15,634	18,460
'13	Report	155,366	10,407	144,959	85,856	8,866	2,208	3,051	16,935	28,043
	Arrest	86,105	4,532	81,573	39,282	6,585	1,288	2,953	13,567	17,898
	Persons Arrested	92,621	5,514	87,107	40,806	5,375	1,485	3,969	14,170	21,302

Year	Typ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Crimes						
		Sub-Total	Internet Fraud	Cyber Financial Crimes	Infringement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fringement of Cyber Copyrights	Spam Mail	Etc.
'14	Report	89,519	56,667	15,596	939	14,168	9	2,140
	Arrest	56,461	40,657	6,567	635	7,198	4	1,400
	Persons Arrested	38,579	17,521	8,572	929	9,851	5	1,701

Source: KNPA Homepage(www.cyberpolice.go.kr).

이 계좌번호를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피해액을 입금토록 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자,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는 당연히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판단하고 상품권을 피의자에게 보내 피의자가 이를 챙겼던 것이다(연합뉴스 2015년 4월 21일 보도).

〈Table 4〉 C2C Internet Fraud Victimization Cases reported to 'The Cheat'

	Number of Victimization	Amount of Victimization(₩)
2006	6,332	2,433,493,000
2007	9,489	3,452,807,000
2008	11,912	4,690,004,470
2009	11,364	4,335,887,000
2010	16,078	5,916,747,009
2011	16,720	5,986,662,843
2012	17,976	6,386,422,439
2013	25,326	7,768,611,760
2014	38,240	11,306,350,594

Source: The Cheat Homepage(<http://thecheat.co.kr/>).

사기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의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2006년 6,332건에서 2014년에는 38,240건으로 무려 504%나 폭증하였다. 피해액도 2006년 24억여 원에서 2014년에는 113억여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피해물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휴대폰과 관련 기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4,56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두 번째로 많은 13,69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티켓이나 상품권보다 월등 많은 피해

양상을 보였다. 2006년 762건인데 반해 2014년에는 8,629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곤란한 필수품의 성격이 강한데다가 최신 휴대폰의 경우 고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싼 값에 최신 기종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티켓이나 상품권의 경우도 최근 들어 피해가 크게 늘어난 품목이다. 2006년 152건에 불과하던 피해신고가 2014년에는 4,478건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피해가 증가하였다. 반면 MP3 및 전자사전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이었는데, 2013년부터는 아예 피해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휴대폰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MP3와 전자사전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MP3와 전자사전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 탓으로 보인다. 카메라 역시 2010년까지는 사기피해 접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1년부터는 감소 내지는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휴대폰의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카메라 폰 성능이 웬만한 카메라 못지않게 향상되어 일반 사진의 경우 휴대폰으로도 대체가 가능해진 것이다.

4. 유형별 사례 분석

4.1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2015년 4월 초 발생한 피해 사건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용의자와 통화해 용의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명함 등을 확인한 뒤 용의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다. 미개봉한 태블릿 PC를 싸게 판다는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용의자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안심해서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비슷한 사례이다.

절반 정도 선입금하고 나머지는 물품을 받고 입금하는 방식 또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의 많은 유형이다. 구매자 입장에서선 절반

만 입금하는 형태여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입금하지만, 사기범은 원래 선입금액이 목표이기 때문에 선 입금된 돈만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게 된다. 올해 4월 초 30대 남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동차 타이어 휠을 사겠다는 글을 올리자 문자로 타이어 휠을 팔겠다는 연락이 와서 일단 절반 액수를 입금한 뒤 물건을 받고 나머지 잔액을 입금하려 했으나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만나서 직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다른 급한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일단 절반만 입금하고 진행하자고 속이는 경우 역시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거나, 인

<Table 5> Top 10 Items of C2C Internet Fraud Victimization Reported to 'The Cheat'

Top 10 Items	Victimization Cases Reported to 'The Cheat'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Cellular Phone/ Peripherals	762	983	864	844	1,608	2,222	3,895	4,754	8,629	24,561
Ticket/ Gift Card	152	371	606	758	1,111	1,451	1,763	3,001	4,478	13,691
Accessories/ Clothes	595	651	740	583건	1,676	1,145	1,459	2,054	2,145	11,048
Camera/ Peripherals	661	936	1,148	1,153	1,356	999건	898건	1,146	1,528	9,825
Computer/ Peripherals	496	681	814	758	934	1,005	1,296	1,249	2,078	9,311
Tablet/ Notebook	243	410	412	436	934	814	1,097	1,502	2,178	8,026
Automobile/ Bike	547	931	934	939	994	737건	704건	835	1,064	7,685
MP3/PMP/ Electronic Dictionary	484	965	1,240	1,328	1,695	1,371	393	•	•	7,476
Shoes	393	332	434	284	1,033	1,663	547	816건	1,187	6,689
Baby and Child Products	•	•	•	428	392	638건	755	1,356	1,719	5,288

Source: The Cheat Homepage(<http://thecheat.co.kr/>).

터넷 직거래 사기 검색사이트인 '더치트' 사이트까지 알려주면서 조회하라고 믿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송장 번호까지 알려주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판매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물품거래를 하는 속칭 '쿨거래' 방식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주로 그동안 이렇게 거래를 했어도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 구매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거래 실적이 양호한 아이디어를 보고 이러한 거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거래실적을 속이는 등의 수법을 통해 구매자를 안심시킨 뒤 대금을 받아 가로채게 된다.

4.2 판매자가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택배 송장 번호를 확인하고 실제로 물품을 받았으나 원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여성은 올해 4월 초 중고 명품 가방을 주문하고 120만 원을 입금했는데 막상 택배로 받은 것은 두유 1통과 헤진 이불뿐이었다. 택배 배송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했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쓸모없는 물품이었다.

카메라 구매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더니 짝 가격에 팔겠다는 연락이 와서 구매하기로 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택배 송장을 확인한 뒤 입금했으나 다른 물품을 받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이다.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 다음날 택배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받았으나 택배 상자 속에는 카메라가 아니라 신문지하고 우유 한 팩이 들어 있었다.

4.3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가방이나 의류 등의 경우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진품이 아닌 가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위조 제품은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였는데, 나중에 확인결과 모두 가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는 판매자로부터 일본 정품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는 말에 속아 총 280만 원을 입금하고 옷을 구매했고, 처음에는 진품인 줄 알고 입다가 의심이 생겨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 제품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5.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사용과 더불어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가 늘어나며 각종 인터넷 중고 장터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 역시 활성화되고 직거래 사기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피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직거래 장터에 중개인이 없다는 점에서 오는 수수료의 부재와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빠르고 간

편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가 간소하고 중개인이 없다는 것은 사이트 이용자들을 보호할 체계적인 절차와 보안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률, 인터넷 이용자들의 거래활동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 등을 통해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의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사기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피해액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 방법이 매우 미흡하다. 우선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의 관리자들은 이용자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피해 신고를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증거물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지급정지신청과 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거절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없어 범인을 잡아도 엄격히 처벌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그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보상액도 실제 피해액 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 역시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대한 별도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우선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규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에게는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사건이 소규모 거래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진행되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본문에서 다뤘듯이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는 사이버범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기라는 포괄적인 범규에서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에게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피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만 피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사건은 소규모이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원천으로 하는 충동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사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역시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범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합의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그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소모가 큰데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미약한 편이다.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들의 목표가 금전적 이득을 손쉬운 방법을 통해 얻기 위함인 만큼 피해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피해액보다 훨씬 더 높게 적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범죄동기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벌금액수를 약식기소에 의한 검사의 권한에 맞기지 않고 표준화된 벌금기준을 만들어 자신이 벌이는 사기행위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존의 법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배상명령 신청제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약식기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

기 때문에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다.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피해금액이 적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 배상명령 신청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사기 피해사건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면 사기범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지우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대가를 적합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거래 전에 더치트, 사이버캡에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기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주는 식의 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 엄격한 처벌규정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Aleem, A. and Antwi-Boasiako, A., "Internet Auction Fraud: The Evolving Nature of Online Auctions Criminality and the Mitigating Framework to Address the Threa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Vol. 39, No. 3, pp. 140-60, 2011.
- [2] Bay, D., Cook, G. L., Grubisic, J., and Nikitkov, A., "Identifying Fraud in Online Auctions: A Case Study," *Accounting Perspectives*, Vol. 13, No. 4, pp. 283-299, 2014.
- [3] Bakos, Y., "The emerging landscape for retail e-commer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 pp. 69-80, 2001.
- [4] Brahme, Ashwini Manish, "Internet Fraud as One of the Cyber Threat and its Impact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ecurity*, Vol. 10, No. 11, p. 38, 2012.
- [5] Burgard, A. and Schlembach, C., "Frames of Frau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Victimization on the Internet,"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Criminology*, Vol. 7, No. 2, p. 112, 2013.
- [6] Choung, W.,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ternet Commercial Transaction," *Kyo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Law*, Vol. 42, No. 2, p. 509, 2007.
- [7] Grazioli, S. and Jarvenpaa, S. L., "Consumer and Business Deception on the Internet: Content Analysis of Documentary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 7, No. 4, pp. 93-118, 2003.
- [8] Hong, S.-H. and Bae, D.-H., "Effective Regulation of New Internet Frau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07-04-01, 2007.
- [9] Kim, D.-J., "Consumer Protection in Elec-

- tronic-Commerce: Controlling Spam mails and Escrow System,”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Vol. 7, No. 1, pp. 79-106, 2008.
- [10] KISA, MSIP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KISA, MSIP, 2014.
- [11] Korean Consumer Agency, “Improvement for the C2C online transaction problems related to consumers,” Korean Consumer Agency, 2012.
- [12]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Retrieved April 12, 2015.
- [13] Kwon, S.-R., “A Legal and Systematic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9, No. 12, pp. 787-796, 2009.
- [14] Lee, B.-H., “Victimization Factors of Internet Fraud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17, No. 1, p. 113, 2008.
- [15] Lee, C.-M., “Cyber-Crimes in Information Society,” Science, Philosophy, and Culture, Vol. 49, pp. 36-52, 2004.
- [16] Lee, S. S., “Fun and Thrill as a Motive of Juvenile Delinquency,”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9, pp. 53-80, 2000.
- [17] Lee, Y.-K., “Research on a new type of Internet Transaction Fraud in the U.S.,” Fair Trade Commission, 2014.
- [18] Lim, Y.-S. and Xiaoi Qu, “A Comparative Study on College Students Consum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Use Internet Shopping between Korea and China,” Commercial Information Research, Vol. 10, No. 1, pp. 33-49, 2008.
- [19] Narayanan, M., Koo, B. and Cozzarin, B. P., “Fear of Fraud and Internet Purchasing,”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19, No. 16, pp. 1615-9, 2012.
- [20] Noufidali, V., Jobin S. Thomas, and Felix Aroky Jose, “E-Auction Frauds-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Vol. 61, pp. 41-5, 2013.
- [21] Ogis, O., “Impact of Fraud on E-Commerce: Proposed New Technologies to Combat Internet Fraud,”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in Business, Vol. 4, No. 3, pp. 634-640, 2012.
- [22] Park, E. Y. and Yoon, J. W., “A Study of Accident Prevention Effect through Anomaly Analysis in E-Banking,”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9, No.4, pp. 119-134, 2014.
- [23] Xiao, B. and Benbasat, I., “Product-Related Deception in e-Commerce: A Theoretical Perspective,” Mis Quarterly, Vol. 35, No. 1, pp. 169-96, 2011.
- [24] Yoo, S. and Choi, K.,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the Safety ransaction Service in Korea,”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3.
- [25] Yoon, J. S. and Park, C., “A Content Analysis on Consumer Deception Behaviors of Internet Shopping Mall,” Internet E-Commerce Research, Vol. 14, No. 3, pp. 15-35, 2014.

저 자 소개



정진호
2015년
2015년~현재
관심분야

(E-mail: sosilion@gmail.com)
중앙대 인문대학 영어학과 (학사)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융합보안학과 (석사과정)
산업보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이창무
2002년
2003년~2014년
2014년~현재
관심분야

(E-mail: cmlee@cau.ac.kr)
뉴욕시립대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 (박사)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교수
산업보안, 금융범죄, 인터넷범죄